



'98 시설물 및 건설안전 정책방향

박 수 남 / 건설교통부 시설안전과장

목 차

- I. 서 언
- II.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
- III. '98 정책방향
- IV. 결 언

I. 서 언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양적 팽창에 치중하였고 이 결과 외형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많은 문제점도 드러나게 되었다. 산업사회로 갈수록 사회구조는 복잡해지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화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뒤따르게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안전에 대해 그동안 정부, 국민,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고 있으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대형사고가 없었던 데다가 요즈음 어

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자칫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안전마인드가 해이해 지거나 투자를 줄이는 등 이 분야를 소홀히 다루는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

안전은 관련종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생활속에서 실천할 때 확보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안전의식을 더욱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그간의 정부대응과 시책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

'90년대 이후 잇달은 건설부분의 대형사고는

표 1. '93년 이후 발생한 대형건설사고 현황

(사망자 20명이상)

발 생 일	사 고 내 용	사망자수
'93. 1. 7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28
3.28	부산 구포열차 전복	78
'94.10.21	성수대교 붕괴	32
'95. 4.28	대구 도시가스 폭발	101
6.29	삼풍백화점 붕괴	502

시행과정에서의 건설시공과 함께 완공 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실공사 방지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분야의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특히, '95. 7월부터 정부내에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정부·학계·업계 공동으로 건설공사의 사전조사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즉 설계, 계약,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건설단계 전반에 걸쳐 보다 근본적인 부실방지과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결과 45개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96. 2. 「건설산업경쟁력강화 및 부실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이 중 33개 과제에 대하여는 이미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근원적인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95.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설물특별법”)을 제정하여 교량·터널·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의 7개분야 시설물을 1·2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

표 2. 특별법대상 시설물의 범위

구 분	1 종	2 종
- 도로, 철도 · 교량 · 터널	· 500m이상, 특수교 · 1,000m이상	· 100m이상 · 국도급이상도로의 터널 등
- 항만, 하천, 댐, 상하수도	· 5만톤급이상 계류시설, 하구둑, 다목적댐, 광역 상수도 등	· 1만톤급이상 계류시설, 직할하천제방, 상수도댐, 하수처리장 등
- 건축물	· 2층이상 또는 5만㎡ 이상 건물	· 16층이상, 3만㎡ 이상건물, 5천㎡ 이상 다중이용시설

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도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정부에서는 '95년도에 건설교통부에 건설안전심의관실을 신설하였고,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여 정밀안전진단 수행, 관련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안전관리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설물정보체계 구축 및 과학적 유지관리체계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실공사방지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건설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시설물특별법의 시행기간이 일천하고 건설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현장까지 체계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건설시공 및 안전의식의 조기정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Ⅲ. '98 정책방향

'98년에 정부에서 추진할 건설안전관련 주요 사업계획은 부실공사방지대책의 계속 추진,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민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정착, 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건설현장 및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 건설기술자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유도 등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1) 부실공사방지대책의 계속 추진

'96. 2. 수립한 「건설산업경쟁력강화 및 부실방지대책」의 개선과제 45개 중 미완료된 다음의 12개 과제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선필요과제의 지속적 발굴과 함께 부실방지에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 설계분야 : 5개(부실설계 및 감리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 입찰계약분야 : 1개(시공 및 유지관리일괄 계약제도 도입)
- 시공분야 : 3개(공사완성보증제 도입 등)
- 기타분야 : 3개(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등)

2)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시설물특별법에 의한 관리대상 시설물공사 및 굴착·발파공사 등에 대하여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4)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점검비용 산출은 완성된 구조물의 안전점검대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대가기준으

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하여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대가기준」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크고 작은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상당부분이 가설물 특히 거푸집, 동바리 및 지보공 설치가 부적정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설물 표준상세도면이 없는 실정이어서 각종 시방서 및 지침에 흩어져 있는 가설물 설치요령을 알기 쉽게 그림과 표를 결들여 매뉴얼 형식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가설물표준상세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3) 민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정착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체계화 되어 가고 있으나 시설물특별법에 의한 대상시설물 16,430개소 중 56%를 차지하는 9,761동의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민간건축물을 다시 나누어 보면 16층 이상의

표 3. 특별법대상 시설물 현황

담당 부서	시설별 합 계	도 로		철 도			항 만	댐	건 축 물	하 천	상 폐 수 도 물	종 별	
		교 량	터 널	교 량	터 널	기 타						1 종	2 종
합 계	16,430	2,644	164	276	290	302	120	67	10,447	793	1,327	3,626	12,804
1. 중앙 행정기관	2,285	968	118	270	91	82	120	49	549	10	28	584	1,701
- 건교부 및 산하 기관	2,038	963	118	270	91	82	-	22	471	1	20	497	1,541
- 다른 중앙행정 기관 및 산하기관	247	5	-	-	-	-	120	27	78	9	8	87	160
2. 지방 자치단체	14,145	1,676	46	6	199	220	-	18	9,898	783	1,299	3,042	11,103
- 공 공	4,384	1,676	46	6	199	220	-	18	137	783	1,299	480	3,904
- 민 간	9,761	-	-	-	-	-	-	-	9,761	-	-	2,562	7,199

※ 민간건축물 9,761동 중 공동주택은 8,172동 임

다중이용시설 : 5천㎡ 이상의 호텔, 터미널, 병원, 백화점 등(1,254동)

공동주택(아파트),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의 일반건축물, 5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백화점, 호텔, 병원, 관람집회시설, 터미널 등)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의 경우로서 16층 이상 아파트는 시설물특별법에 의하여 3개월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일상점검의 대상이 되는데 이 점검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점검비용의 부담, 또 점검 필요성에 대한 이해부족, 자기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시민의식이 부족한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비용은 안전진단기관이 3개월마다 실시했을 시 대가를 기준으로 볼 때 30평 아파트의 경우 1가구당 월 5천원 정도가 되므로 결코 큰 부담은 아니다.

민간시설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시설물특별법령을 개정하여 주택관리사에게 소정의 교육을 이수도록 한 후 공동주택에 대한 일상점검을 할 수 있도록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하여 입주민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한편 민간관리주체가 수립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민간시설물의 안전점검이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제도화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이다.

4) 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물특별법상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은 '98.2월말 현재 155개가 지정되어 점검·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진단기관에서 부실진단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부실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시켜 진단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

도록 시설물특별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한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여금 문제가 제기된 민간안전진단기관의 진단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기법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연구·개발·보급과 진단업무 관련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표 4.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현황('98. 2월말)

구분	계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대전 충청	강원
전국	155	93	16	12	20	6	4	4

5) 건설현장 및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

건설안전은 관련제도의 개선과 함께 주요건설공사의 경우 분기별 1회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민간건설공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을 실시한 후 건설교통부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인점검을 하며, 저가 등 특별관리대상공사 및 레미콘, 아스콘 등 전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위법사항 및 구조물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부실시공은 엄중 처분하고, 건설시공 수범사례는 연중 발굴하여 포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시설물로서 시설물특별법 대상시설물 16,430개소 중 상대등급이 불량한 D, E급 시설물 169개소, 건설교통부 소관시설물 15,921개소 중 재단위험시설물 205개소와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중시설물로서 정밀안전진단대상인 486개소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관리실태 및 안전조치현황 등을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표 5. 불안전시설물(D, E급) 현황

구분 \ 상태별	계	불안전시설			안전시설 (A, B, C 급)
		소 계	D 급	E 급	
전 체	16,430	169	159	10	16,261
건교부 및 산하기관	2,038	34	34	-	2,004

※ D급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

E급 :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

표 6. 건설교통부 소관 시설물 현황

구분 \ 상태별	계	도로	일반			공항	건축물
			철도	담·하천	상하수도		
전 체	15,921	4,483	9,336	23	20	46	2,013
재 난	205	152	30	22	-	1	-

※ 재난 :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시설물

6) 건설기술자 교육

건설공사 전단계에 걸쳐 관련제도를 개선하였

으나 아직 개선효과가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일부 현장종사자의 적당주의가 잔존하고 있어 건설회사 담당임원 및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의 정책방향 홍보 및 관계자의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관련교육 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건설시공 및 안전의식 조기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IV 결 언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는 정부의 제도개선이나 시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중 요한 것은 시설물의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대행자가 자기 시설물은 자기책임 으로 챙겨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야 하겠 고,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자 및 현장종사자 등 관련주체가 자기의무를 성실 히 수행하여 건설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안전사 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떨쳐 버리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안내

우리 **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관한 소식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lab.go.kr>

위의 주소로 들어가서 **직업훈련정보제공 화면**을 선택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